

• 대기분야

홍문관

판례 •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소극)

나.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16조제5호에 해당하는 손비를 같은 조 제4호의 손비로 잘못 판단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적부(적극)

(대법89누5386, 90.3.23.)

요지 1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배출부과금도,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손비가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라고, 그 손비가 같은 법조 제5호에 해당하여 어차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판단되는 이상,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개정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 가, 나. 법인세법 제16조
-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 나. 행정소송법 제1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피고가 1988. 9.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17,884,950원과 방위세 금 3,940,160원을 부과하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개정한 이 사건 개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개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원고는 골판지 원지의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골판지를 생산함에 있어서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인 경기도로부터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1985. 7. 1. 금 14,457,360원, 12. 16. 금 43,281,140원의 각 납부통지를 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배출부과금 합계금 57,738,5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85.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금 125,194,501원으로 신고하고, 이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법인세 금 22,790,845원과 방위세 금 7,488,420원을 신고·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위 배출부과금이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의 손금불산입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과세표준을 개정하여 이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법인세 금 40,675,802원과 방위세 금 11,428,584원에서 이미 신고·납부된 법인세와 방위세를 공제하여 이 사건 개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환경보전법은 제19조의2에서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 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제62조의2인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항).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율, 배출기간, 오염물질 등의 중별 및 발생량에 따라 산출하되, 그 산정기준, 납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제4항)”고 규정하는 한편, 제66조 이하에 따라 벌칙규정을 두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경우를 규

정하고, 특히 제69조의2에서 과태료를 과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벌칙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환경보전법의 체제로 보나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 내용으로 보더라도 위 배출부과금을 수익자부담금 내지 원인자부담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에서 손금불산입되는 손비로 규정하고 있는 “벌금, 과료(科料,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 過料)과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한정적인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법조에 규정된 손비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손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금불산입되는 손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위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개정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② 환경보전법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같은 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이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6조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다만 같은 법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0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체세공과금”을 제외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16조제5호의 “공과금”(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배출부과금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원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

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당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1987.11.10. 선고, 86누491 판결;1989.4.11. 선고, 87누64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손비가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비가 같은 법조 제5호에 해당하여 어차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판단되는 이상,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개정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④ 그렇다면, 위 배출부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판단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개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배출부과금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이 사건 개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가.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나.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 수목의 성장에 장애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공장에서 배출

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인 경우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라. 공해사건에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자연력의 기여분

마.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대법 89다카1275. 91.7.23)

오지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난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나.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위 농장에 도달됨으로 인하여 유황이 잎 내내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애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라.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

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마.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 나. 다. 민법 제750조

다. 환경보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라. 민법 제763조, 제393조

마. 민법 제76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과 의정부간의 국도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수락산 부근의 의정부시 장암동 산102의 임야 8,900여평에 1961년경부터 도봉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목, 반송, 백송, 향나무, 옥향, 목련 등 고급관상수를 재배해 왔고, 피고는 1969.10.경부터 위 도봉농장과 서북쪽으로 접한 같은 동 135지상에 모직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설치하여 가동하여 오면서 그 연료로 방카씨유를 사용함으로써 그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 및 낙진을 굴뚝을 통하여 대기중에 배출시켜 온 사실, 그런데 1981.3.경을 전후하여 원고농장의 주목, 향나무, 반송, 백송 등 일부 관상수들이 갓솜조직과 표피세포의 원형질분리로 누렇게 변색되어 잎이 떨어지고 수목 자체까지 고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공장의 굴뚝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 부근(이하 피해 극심지역이라 한다)의 관상수들에게서 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던 사실, 아황산가스는 수목잎의 기공을 통하여 잎 내내 침투한 후 공변세포와 엽록소를 손상시켜 잎의 호흡, 증산, 탄소동화작용 등을 저해함으로써 탈수현상과 세포파괴를 초래하여 수목을 고사케 하며 이러한 아황산가스의 수목에 대한 침해정도는 수목의 종류, 아황산가스의 농도, 접촉시기와 기간, 기상 조건 및 토양조건 등에 따라 달라

지기는 하나 대체로 아황산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0.4 피.피.엠(pp.m)이상일 때 급성피해를 입게 되고, 0.1 내지 0.2피.피.엠 이상일 때 수목에 서서히 나쁜 영향을 끼쳐 만성적으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사건 피해현상이 나타나게 된 1981.3. 경을 전후하여 피고 공장에서 배출한 아황산가스가 대기 중에서 확산 희석되어 원고농장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농도는 대체로 위 급성 또는 만성피해로 인한 고사현상을 가져올 정도에 미달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가 생긴 후인 1981.5초경 원고농장의 위 피해수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해수목의 엽내 유황함량은 대부분 0.18 내지 0.31퍼센트 정도이고 피해중세가 심한 수목일수록 이에 비례하여 그 유황함량이 많았으며 피해극심지역에 피해수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별 피해가 없거나 근소하였던 사실과 대기 중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장애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사실, 한편 1980.12.과 1981.1.에는 74년 만의 최고의 한파가 닥쳐서 서울근교를 중심으로 한 전국각지에서 많은 수목이 동해를 입었고 동해의 증상도 아황산가스로 인한 피해증상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원형질 분리와 파괴, 황화현상, 이상낙엽, 고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확정된 다음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위 한파로 인한 동해이고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위 아황산가스는 위 관상수들이 한파에 의하여 쉽사리 동해를 입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관상수들이 동해로 인하여 고사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이 사건에서처럼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에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난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

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6.12. 선고. 81다5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 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이고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공장에서 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아황산가스가 배출되고 그 아황산가스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의 농장에 도달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유황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애가 됨으로써 한파로 인한 동해에 상호작용을 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공장에 배출한 위 아황산가스와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의 동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조치는 위 설시와 같은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개연성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②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 하는 한 원인이 된 이상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③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결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것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한파라는 자연력이 손해에 기여한 부분을 제한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동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의 인정된 손해 중 40퍼센트를 배상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한파라는 자연력에 대비하여 관상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을 이유로 60퍼센트의 원고과실을 인정한 조치 속에는 자연력의 기여도를 제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속에 한파로 인한 동해라는 자연력의 기여에 따른 책임감경분까지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기록에 나타난 사고 당시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④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 90다카26607. 91.7.26)

요지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35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환경보전법 제60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경남 울주군 온산면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1974.경부터 위 온산면에 비철금속단지인 온산공단이 조성되어 피고들 공장이 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을 배출하면서 가동되어 각종 오염물질이 온산면의 대기 및 수질 등의 오염을 초래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오염지역에 거주하면서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가스와 강하분진으로 오염된 대기에 노출된 결과 이 지역 각 부락에서 1년에 수백명씩 피부병, 호흡기질환 및 눈병 등이 발생하여 집단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질병으로 인한 각종 자각증상을 호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의 공장에서 배출된 공해물질로 인하여 초래된 환경오염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구체적인 발병에 이르는 아니하였다 하여도 적어도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애를 입었고 이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환경오염을 초래한 피고들의 행위는 생활환경의 보호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및 환경보전법 제6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생활환경의 침해 및 이로 인한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수긍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받은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자료나 소송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위자료는 위와 같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 및 이로 인한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인한 심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지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므로 재산적인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이 없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